

오픈뱅킹 개선방안 세미나

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

2020. 7. 6.

서정호·권흥진

목 차

1. 영향 평가

가.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

나.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

2.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

3. 향후 과제

가.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(1/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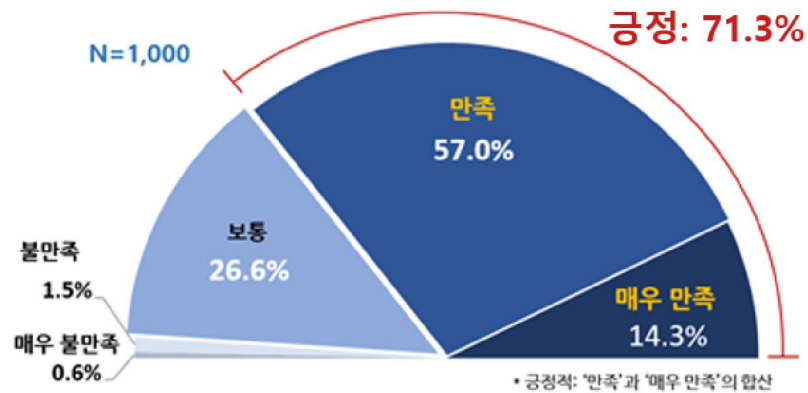
- ◆ 한국금융연구원 · KRG는 은행 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.1~4.8일 기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
 - 은행 앱 오픈뱅킹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남녀 각각 50명, 20대 · 30대 · 40대 · 50대 남녀 각각 100명, 총 1,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
- ◆ 오픈뱅킹 서비스 인식도, 만족도, 장점, 불만족 사항, 향후 이용 의향 등을 조사
 - 오픈뱅킹 서비스 인지 경로 및 사용계기
 - 오픈뱅킹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기능별 만족도
 - 오픈뱅킹 서비스의 장점별 공감도
 - 오픈뱅킹 서비스의 불만족 사항, 사용 시 우려되는 사항, 개선 요구사항
 - 오픈뱅킹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및 기대되는 변화

가.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(2/4)

- ◆ 설문 결과, 이용자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.
- ◆ 오픈뱅킹의 장점으로 이체 시 송금 수수료가 무료라는 "비용" 측면의 장점과 간편송금 앱과 같은 통합 조회, 이체가 가능하다는 "유용성" 측면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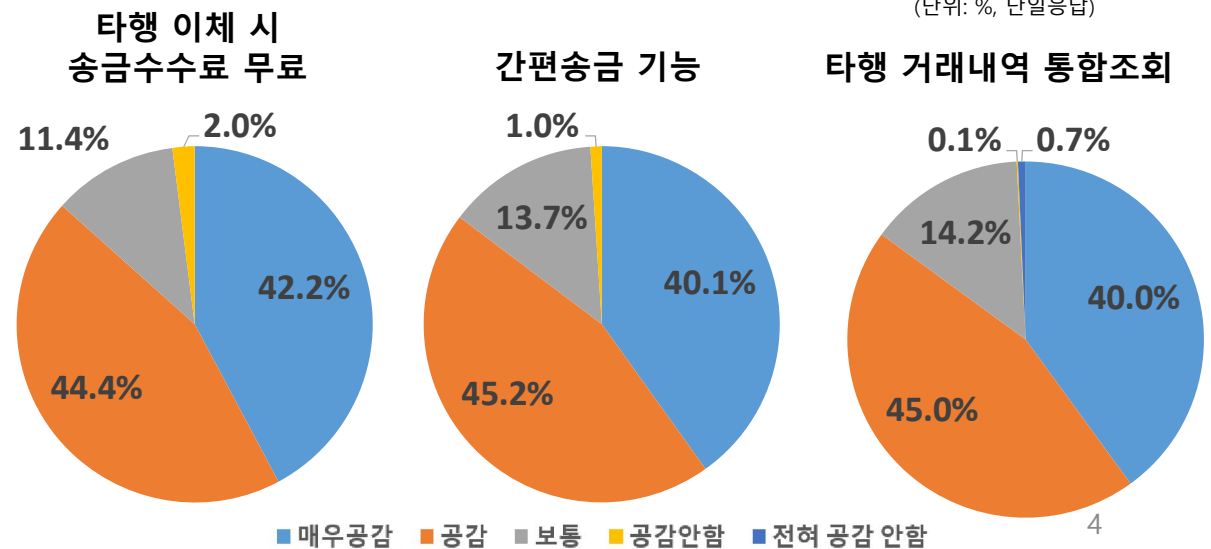
오픈뱅킹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

(단위: %, 단일응답)



오픈뱅킹 서비스의 장점별 공감도

(단위: %, 단일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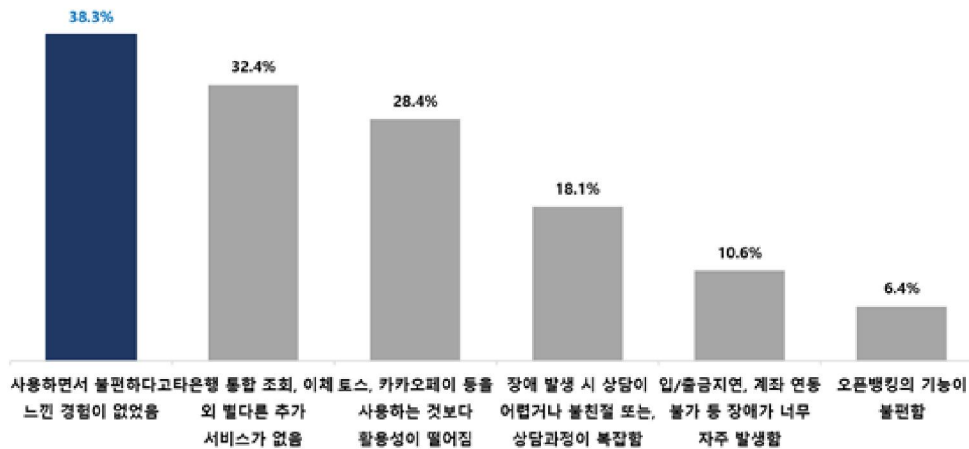


가.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(3/4)

- ◆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 '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경험이 없었다'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, 타행 통합조회/이체 외 별다른 서비스가 없고 간편송금앱보다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제기됨.
- ◆ 오픈뱅킹 사용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크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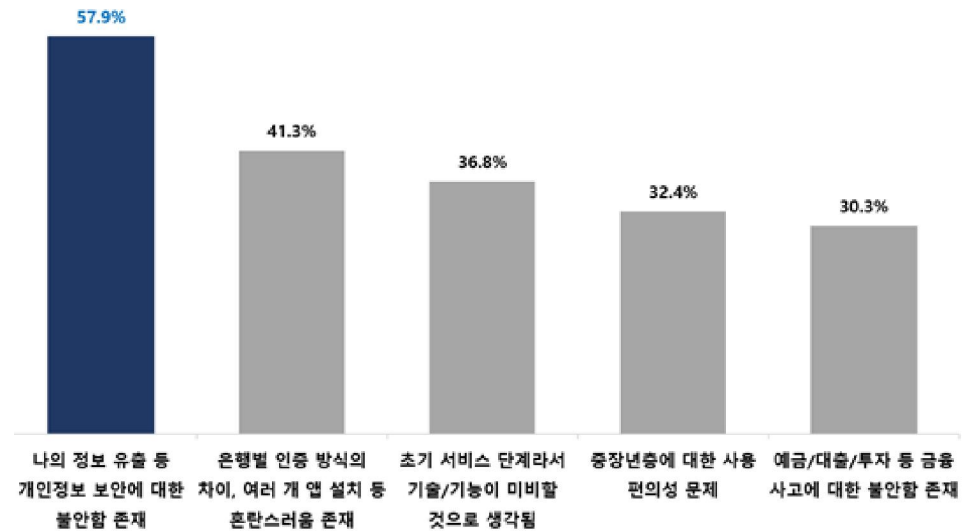
오픈뱅킹 서비스의 불만족 사항

(단위: %, 복수응답)



오픈뱅킹 사용 시 우려되는 점

(단위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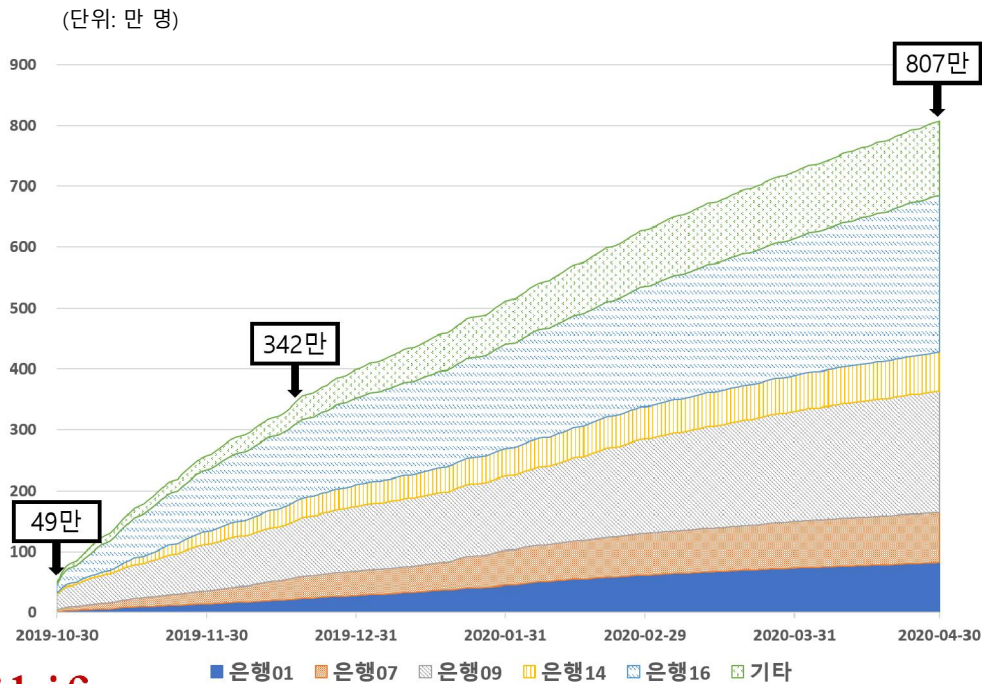
가.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(4/4) - 시사점

- ◆ 은행 등 이용기관은 자사 앱의 편의성 제고, 서비스 다변화와 함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
 - 은행 앱-간편송금앱 간 상대적인 편의성, 유용성, 보안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, 은행 앱이 간편송금앱보다 편의성, 유용성은 떨어지고 보안성에서도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인식
- ◆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의 오픈뱅킹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, API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, 보안 및 운영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
- ◆ 정책적으로는 오픈뱅킹이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 - 오픈뱅킹이 핀테크기업-은행 간 수수료 인하에만 그치지 않고,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절감이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품질 개선 등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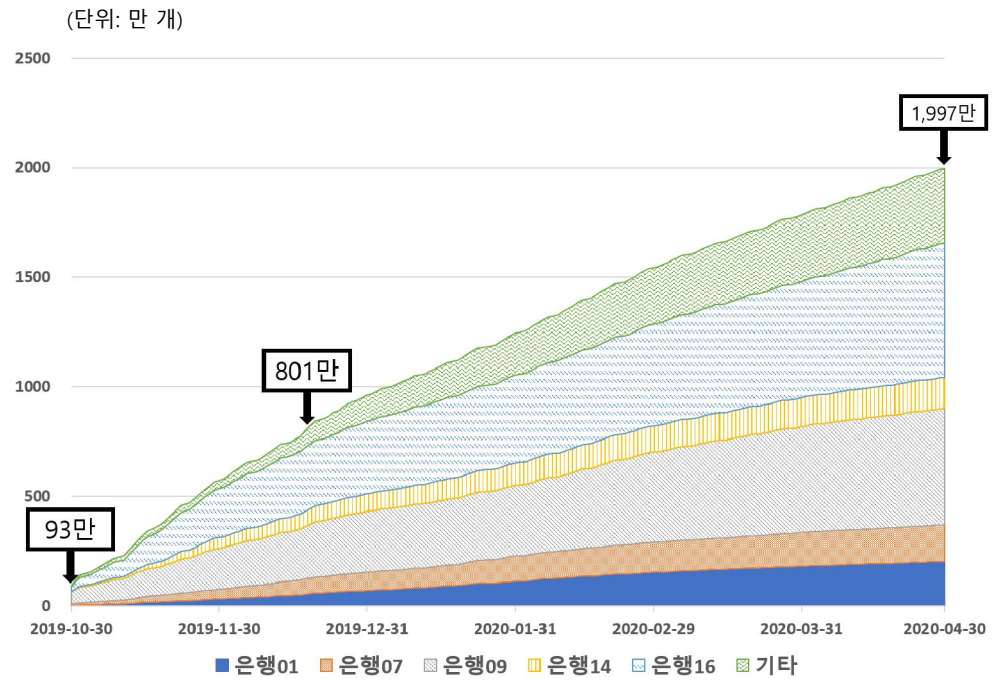
나.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: 은행(1/2)

- ◆ 은행 앱 내 오픈뱅킹 등록자수(등록계좌수)는 시범 실시일 49만 명(93만 개)에서 올해 4월 말 807만 명(1,997만 개)으로 빠르게 증가(6월 말 기준 851만 명, 2,371만 개)
 - 등록 실적은 일부 은행(아래 은행09 및 은행16)에 집중

은행별 오픈뱅킹 누적 등록자수(조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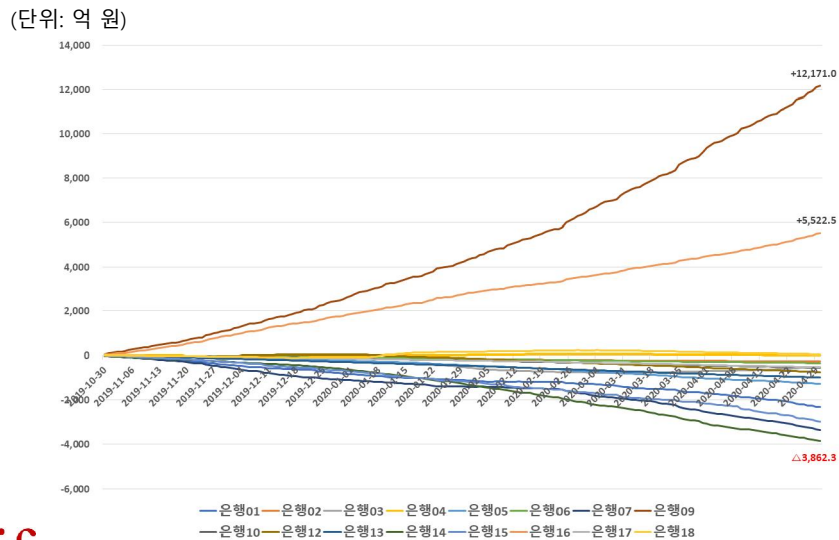
은행별 누적 등록계좌수(조회)



나.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: 은행(2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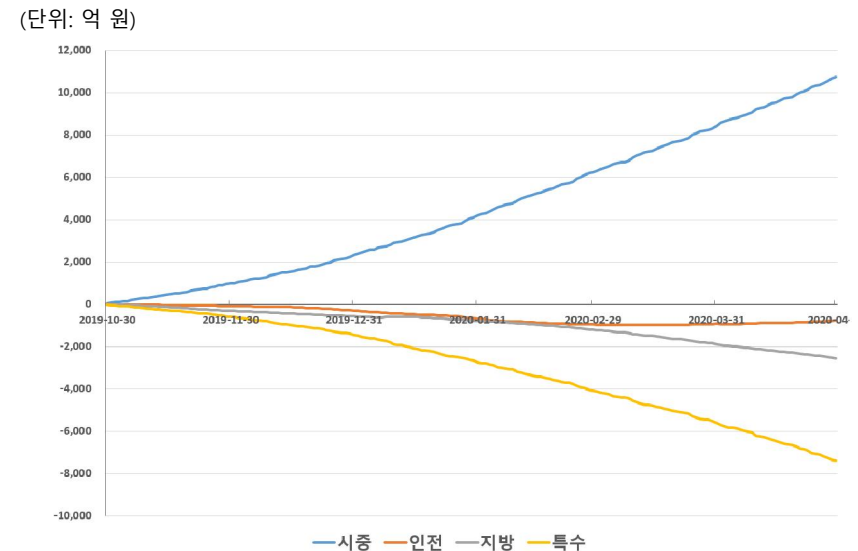
- ◆ 일부 은행은 오픈뱅킹을 통해 상당한 자금 순유입(최대 1.2조 원)을 기록하였으나, 평균 원화예수금 규모(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 `19 중 평균 203조)를 고려하면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
- ◆ 오픈뱅킹을 통한 순유입/출은 은행 분류(시중/지방/특수/인뱅)보다 각 은행의 특성(앱, 마케팅 등)에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
 - 일부 지방은행은 조사기간(시범실시~`20.4.30) 중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의 순유입을 기록

은행별 누적 순유입/출 금액



자료: 금융연구원 분석(금융결제원 자료 바탕)

은행 분류별 누적 순유입/출 금액



자료: 금융연구원 분석(금융결제원 자료 바탕)

<참고> 오픈뱅킹 등록자수 및 등록계좌수 추이

◆ 작년 11월 11일 은행 앱 내 오픈뱅킹에 어카운트인포가 연동됨에 따라 오픈뱅킹 등록자수와 등록자별 평균 등록계좌수가 유의하게 증가

일별 타행계좌 조회 등록자수(19/10/30~19/11/24)

(단위: 개)

요일	월	화	수	목	금	토	일
일자			10/30	10/31	11/1	11/2	11/3
등록자수 (전주 대비 %)			490,371	171,669	116,864	39,721	36,337
일자	11/4	11/5	11/6	11/7	11/8	11/9	11/10
등록자수 (전주 대비 %)	72,220	74,275	70,230 (△85.7)	83,824 (△51.2)	73,853 (△36.8)	34,875 (△12.2)	31,553 (△13.2)
일자	11/11	11/12	11/13	11/14	11/15	11/16	11/17
등록자수 (전주 대비 %)	89,096 (+23.4)	87,733 (+18.1)	85,669 (+22.0)	75,135 (△10.4)	78,354 (+6.1)	33,009 (△5.4)	33,212 (+5.3)
일자	11/18	11/19	11/20	11/21	11/22	11/23	11/24
등록자수 (전주 대비 %)	67,903 (△23.8)	68,550 (△21.9)	74,280 (△13.3)	73,984 (△1.5)	76,712 (△2.1)	27,396 (△17.0)	27,377 (△17.6)

어카운트인포 연동 전후 등록자별 등록계좌수



자료: 금융연구원 분석(금융결제원 자료 바탕)

자료: 금융연구원 분석(금융결제원 자료 바탕)
 주: 18개 은행 중 동 기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은 케이뱅크, SC제일, 씨티, 수협, 산업, 카카오를 제외한 12개 은행 등록자수를 합산

나.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: 제2금융권

- ◆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오픈뱅킹에 적극 참여하기 원하고 있는데, 주요 동기는 ① 비용절감 ② 신규고객 유치 ③ 통합정보 조회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임.
 -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, 비과세 혜택 등을 이용하여 여타 업권의 고객을 획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.
 - 업권 내에서도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대형사와 경쟁력이 낮은 중소 금융사 간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음.

제2금융권에 예상되는 변화(공통)

자금 및 고객이동

-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, 편의성에 따라 고객 유인 존재
- 오픈뱅킹기반의 신사업에 선제적 진입시 시장선점에 유리

수익성/ 유동성

- 펌뱅킹을 통해 핀테크와 연결해 왔던 기관은 수수료 수입 축소
- 업권간 경쟁 심화로 이자 및 수수료 수익성 저하 예상
- 자금의 변동성 증가(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어려움)

향후 과제

-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, 다변화 방안 마련
- 오픈뱅킹 연계 플랫폼 경쟁력 강화
- 관련 리스크관리 및 보안 강화

나.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: 핀테크기업

- ◆ 핀테크 앱 오픈뱅킹 등록자수(등록계좌수)는 6월 말 기준 3,245만 명(4,217만 개)에 달함.
 - 핀테크기업의 API 누적 전송 건수도 크게 증가하여, 6월 말 기준 출금이체 API의 누적 전송 건수는 2억 9,27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- ◆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어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, 이는 핀테크 서비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
 - 핀테크기업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 후 6월 말까지 출금이체 API를 통해 펌뱅킹을 이용했을 때 보다 총 약 732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(평균 펌뱅킹 출금이체 수수료를 300원으로 가정)하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, 이는 핀테크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한 것으로 판단
 - 다만,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 소비자 혜택은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음.
- ◆ 은행계좌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신생 핀테크기업의 시장 진입이 매우 용이해짐.
 - 신생 핀테크기업은 18개 은행과 개별적인 펌뱅킹 계약을 하지 않고 오픈뱅킹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서비스를 개발, 제공할 수 있게 됨.

목 차

1. 영향 평가
2. **오픈뱅킹 고도화 방안**
 - 가. 참여기관의 확대
 - 나. 기능 다각화
 - 다. 채널 확대 및 수수료 체계
 - 라. 리스크관리 강화
 - 마. 서비스 연계
3. 향후 과제

가. 참여기관의 확대

이용기관



참가기관



오픈뱅킹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(18개) 접속 효과

자료: 금융결제원(2019)



가. 참가기관의 확대 : 참여절차

- ◆ 오픈뱅킹 '이용기관'은 기본적으로 오픈뱅킹 '참가기관'이어야 함.
- ◆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등이 오픈뱅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총회 승인을 통해 해당 업무의 특별 참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여야 함.

기관 구분	참여절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결제원 사원, 준사원 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도 승인절차 없이 참여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원, 준사원 기관은 아니나 은행법상 은행 (예, 외국계은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참가금에 대한 금융결제원 총회 승인절차 필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은행이 아닌 기관으로서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(예, 상호금융, 금융투자회사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참가(특별참가금 포함)에 대한 금융결제원 총회 승인절차 필요 • 해당 업무의 특별 참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여야 함.

자료: 금융결제원

가. 참가기관의 확대 : 추진방안

- ◆ 수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업권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하도록 권고함.
 - 수신계좌 보유 업권 중 사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즉,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가 완료된 업권 중심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
- ◆ 현행 오픈뱅킹 관련 규정 상 이용기관으로만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.
 - 다만, **오픈뱅킹의 활성화 차원**에서 총회으로부터 특별참가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의할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신청기관도 **상호주의** 차원에서 적절한 정보제공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임.

제11조(이용자격)

① 오픈뱅킹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(이하 "이용신청기관"이라 한다)은 오픈뱅킹업무의 참가기관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

1.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(별첨1)
2.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
3. 기타 결제원이 인정하는 자

나. 기능 고도화 : 현황 및 수요조사

오픈 API 제공 현황

	핵심 API	세부내역
조회	잔액조회	사용자(고객) 본인계좌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	거래내역조회	사용자(고객) 본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	계좌실명조회	이용기관이 사용자(고객)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	송금인정보조회	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 (고객)의 실명 및 송금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	수취조회	입금계좌의 입금가능 여부 및 수취인 성명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이체	출금이체	출금에 동의한 사용자(고객)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 기관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
	입금이체	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(고객)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



자동이체 등록조회

출금한도 조회

외환/신탁/퇴직연금/대출
계좌조회

다양한 계좌의 거래내역

어카운트인포

선불충전금잔액조회



나. 기능 고도화 : 추진방안

- ◆ **오픈뱅킹에서는 입출금계좌에 한정하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**
 - 출금한도조회, 자동이체등록조회 등이 가능할 것임.
 - 나머지는 어카운트인포나 마이데이터 등의 영역에서 제공
 - ✓ (예) 외환·신·탁퇴직연금 등의 상세 계좌정보 → 마이데이터 영역에서 논의
- ◆ **어카운트인포(Account Info) 공개, 충전금잔액조회 등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활성화와 상호주의 차원에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**
 - 어카운트인포와 같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오픈뱅킹 이용기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

다. 채널 확대 및 수수료 체계 (1/2)

- ◆ (개념) 고객이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, 영업점 직원 및 직원 단말기(PC)를 통해, 타행계좌 잔액·거래내역 조회, 송금 등을 오픈뱅킹 API를 통해 실시
- ◆ (장점) 금융접근성 개선, (오픈뱅킹 수수료가 ATM보다 낮을 시) 금융비용 감소,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,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이 있음.
- ◆ (단점) 서베이에서 나타난 낮은 소비자 니즈,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 우려, 금융사기 가능성 및 피해금액 증가 등이 있음.
- ◆ (종합의견) 대체 정책수단 검토,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
 - (금융접근성) 은행 공동 영업점 운영, 영업점 축소 억제, 우체국 등의 ATM 확대
 - (금융비용)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점포 외 ATM에 대한 수수료 규제 또는 수수료 보전
 - 디지털금융 이용 촉진과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한 소비자 교육
 - 향후 은행 외 금융회사가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

다. 채널 확대 및 수수료 체계 (2/2)

- ◆ (지급서비스 관련 API) 송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계비용, 전산설비 등의 감가상각비, 전산 설비 투자를 위한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
 - 현재 출금이체, 입금이체, 잔액조회 API 등이 이에 해당
- ◆ (조회 관련 API) 정보보호를 위한 은행의 설비 투자 유인(장기적인 효율성)과 금융혁신 촉진, 소비자 편익 제고(단기적인 효율성)간에 균형 잡힌 수수료 체계가 필요
 - 조회 관련 API(현재 거래내역조회 API)는 지급서비스 관련 API와 달리 API 수수료가 낮게 설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웹스크래핑(카카오뱅크 제외)을 통해 조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.
 - 은행은 전산설비 투자 등을 고려한 장기비용(장기적인 효율성), 핀테크기업은 현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한계비용(단기적인 효율성)을 조회 관련 API의 적절한 가격이라고 주장함을 감안하여, 양자 간에 균형이 잡힌 수수료 체계가 필요
- ◆ 이용자당 월 요금제, 이용자 접속 세션별 요금제 등 이용기관이 자사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

라. 리스크관리 강화

◆보안리스크 관리 강화

- 전자금융업자 자체점검 허용 폐지
-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안관제체계 강화
- FDS 고도화 및 금융공동망 기반 금융의심거래 종합분석 서비스와의 연계 추진
 - ✓이용기관 및 운영기관 단계에서의 보안리스크 관리 강화

◆운영리스크 관리 강화

- 오픈뱅킹 관련 포탈/협업체 운영
 - ✓이용자 문의/민원/분쟁 및 이용기관 간 분쟁 처리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
- 오픈뱅킹 법제화
 - ✓제공기관 및 이용기관의 범위 및 참여요건, 제공기관·운영기관·이용기관·이용자의 권리·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규 측면의 불확실성을 완화

마. 서비스 연계 : 해외사례

- ◆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는 AISP에 PISP를 결합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사례가 대부분
 - AISP와 PISP에 대해 통합된 단일 API를 사용함으로써 API 호출비용 절감
 - 소비자는 하나의 앱(app)에서 여러 기능을 이용, 중복 인증(authentication) 최대한 축소 → 편리성 증대



- 범용 Open API인프라 개발(결제정보 및 은행정보를 공유·통합)
-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TruLayer Open API에 액세스 하여 데이터를 이용
→ 각 은행 API에 개별적인 연결 없이 한번에 다수의 은행과 연결 가능



- 고객 금융거래정보 통합조회 기능
- 클라우드기반 데이터분석을 통한 자산관리(PFM) 서비스 제공
- Open API 기반 금융회사 간 데이터 규격화 및 데이터 중개사업(B2B)

마. 서비스 연계 : 추진방안

- ◆ 연관성이 높은 마이데이터, 마이페이먼트 등의 기능을 오픈뱅킹 플랫폼에서 지원하거나 오픈뱅킹의 하위 중계기관을 두는 방안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.
 - 하위 중계기관을 통해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부담 경감

이용기관



참가기관

목 차

1. 영향 분석
2.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
- 3. 향후 과제**

3. 향후 과제



오픈뱅킹 참여 및 이용 관련 사항의 법제화

- 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
- 이해관계자들 간 공론의 장(場) 활성화



오픈뱅킹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

- 운영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면 시스템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짐
- 금융결제원 관련 각종 데이터 공개
→ 오픈뱅킹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


참가기관-이용기관 간 상호주의 원칙 적용

- 정보 공유 및 운영비용 부담 측면



금융회사 '개별API'를 통한 혁신 유도

- 보다 차별화된 혁신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별API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